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316
----------	-------

발의연월일 : 2026. 7. 30.

발 의 자 : 신동욱 · 박준태 · 송언석
유용원 · 조배숙 · 구자근
윤용근 · 박상웅 · 윤한홍
이상휘 · 주진우 · 나경원
의원(12인)

제안이유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허위조작정보 규제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조항을 신설·강화했음.

그러나 해당 법률은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의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검열을 남용할 우려가 크고, 동일한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과징금을 중복 부과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과잉규제 및 이중처벌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조치 의무 등 허위조작정보 관련

핵심 규정들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타인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하도록 의무화(제44조제3항)
- 나.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 유통금지 조항 삭제(안 제44조의7제1항 제2호의2 및 제2항 삭제)
- 다.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안 제44조의10 삭제)
- 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신고·조치 의무, 사실확인 지원 등 조항 삭제(안 제44조의11, 제44조의15부터 제44조의17까지 삭제)
- 마.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조항 삭제(안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 삭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의2를 삭제한다.

제44조제3항 중 “권고할 수 있다”를 “권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4조의6제1항 중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를 각각 “민·형사상의”로,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이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분쟁조정부는”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를 “민·형사상의”로 한다.

제44조의7의 제목 중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을 “정보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거짓의”를 “사실이나 거짓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44조의10 및 제44조의11을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의12의 제목 중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각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각각 “불법정보”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을 “분쟁조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각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한다.

제44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한다.

제44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대규모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한다.

제44조의15부터 제44조의1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의1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의18(명예훼손 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 그 밖에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중 “분쟁조정부”를 각각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로 한다.

제44조의20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중 “분쟁조정부”를 각각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로 한다.

제44조의21제1항 및 제2항 중 “분쟁조정부”를 각각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로 한다.

제44조의2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분쟁조정부”를 각각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로 한다.

제44조의23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분쟁조정부”를 각각 “명

예 훼손 분쟁조정부”로 한다.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6조제5호 중 “제44조의18에 따른”을 “명예훼손”으로 한다.

제7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76조제3항제4호의2 중 “분쟁조정부의”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4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제2조(정의) ①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제4호에 따른 이용자 수, 서비스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삭제>
3의3. ~ 13. (생략)	3의3. ~ 1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 ② (생략)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 ----- ----- ----- ----- ----- -----권고하여야 한다.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

민 · 형사상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이하 “명
예훼손 분쟁조정부”라 한다)의

민 · 형사상
의

[illegible]

③ _____

이용자의 정보를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생략)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2의2.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해당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

-----민·형사상의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정보를-----.

1. (현행과 같음)

2. -----사실이나 거짓의-----

<삭 제>

용의 정보

가.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
을 선동하는 정보

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
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
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3. ~ 9. (생략)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
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
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정보(이하 “허위조작정
보”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
외한다.

1.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
위인 정보(이하 “허위정보”라
한다)

2.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이하 “조작정보”
라 한다)

3. ~ 9. (현행과 같음)

<삭제>

③ <u>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u> ④ ~ ⑥ (생략) <u>제44조의10(손해배상) ①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u> <u>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보 유통에 따른 구체적</u>	③ -----<u>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u>----- ----- ----- ----- ----- ----- ----- ----- ----- ----- ----- -----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u><삭 제></u>
---	--

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울 때에는 확정판결까지의 소요기간 등 법 위반상태의 지속기간,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손해액을 말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게재자 중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정보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
2.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

적이 있는 경우

3. 정보 유통으로 인하여 피해
자에게 법익(法益)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원고
외의 자가 입은 피해도 포함
한다) 규모 및 정도

2.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의 유통으로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3.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의 내용 및 정도, 그 유통의
기간·횟수, 전파의 정도

4.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의 유통에 따라 부과된 형사
처벌 및 과징금의 정도

5. 해당 정보가 이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되
어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실질적으로 동
일한 내용을 유통하였는지 여
부

6. 해당 정보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정정보도
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
을 유통하였는지 여부

7. 해당 정보의 본문 또는 전체
내용과 명백히 다른 내용의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를 제목 또는 자막으로 강조
하였는지 여부

8.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의 유통을 전후하여 피해자에
게 금품 또는 부당한 조치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9. 가해자의 재산상태

10. 가해자의 피해구제 노력 정
도

11. 동일한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부과되는 제재의 수준

⑤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

조제1호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사항
에 대한 정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와 관련된 사항
으로 인정되는 정보

⑥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법
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피용
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
임의 주체가 되지 아니한다. 다
만, 그 피용자가 해당 법인 또
는 단체를 실질적으로 경영하
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
로서 제44조의7제1항 또는 제2
항에 따른 행위에 가담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와 연대하여 손
해배상책임을 진다.

⑦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의 유통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정보의
유통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이라
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
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4조의11(가중 손해배상 청구

<삭 제>

남용에 대한 특칙) ①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중간판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중간판결의 선고시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제44조의1

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2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게재된 정보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2. 원고가 반복적으로 또는 다수의 게재자를 상대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지 여부

⑥ 법원이 제5항에 따라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전액을 포함한다.

⑦ 법원은 제5항에 따른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가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인등에게 공표 방식을 지정하여 소각하 판결을 공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른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을 위한 심문절차, 제2항에 따른 피고의 중간판결 신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 및 제7항에 따른 판결 공표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⑩ 공인등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하여 제5항에 따라 각하될 경우 법원은 공인등에게 피고가 입은 소송절차 대응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제44조의12(불법정보와 허위조작
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① 누구든지 대
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
조작정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
는 자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
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
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대규
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규
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
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는 경
우 해당 조치를 한 정당한 이

제44조의12(불법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①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불법정보-----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
-----.

② -----
-----불법정보-----

-----불법정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③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
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 8. (생략)

④ (생략)

⑤ 신고자 또는 게재자는 대규
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제3항에 따른 조치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제44조의20에 따른 분
쟁조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는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
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
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
보의 판정기준이나 신고와 조
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
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는 제6항의 자율적인 운영
정책을 수립할 때 이해관계자
나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을 반영하여야 한다.

⑧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

-.

1. ~ 8.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

----분쟁조정-----

-----.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불
법정보-----

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⑧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언론사,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 ----- ----- ----- ----- -----.
제44조의13(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 <u>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u> 는 명백히 근거 없는 신고를 빈번하게 하는 등 신고 제도를 남용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 대하여 사전 통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제44조의12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4조의13(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 <u>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u> ----- ----- ----- -----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u>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u> 의 성격과 신고 남용의 결과가 피해자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3. <u>불법정보</u> -----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제44조의14(보고서의 공표 등) ① <u>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u> 는 6개월에 1회 이상 다음 각	제44조의14(보고서의 공표 등) ① <u>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u> ----- -----

호 및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근성이 보장된 방식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신고된 <u>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u> 의 제44조의7의 유형에 따른 분류와 각 신고 건수 및 이에 따라 처리한 건수, 조치	2. ----- <u>불법정보</u> ----- -----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u>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u> 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나 권고의 내용과 수, 명령이나 권고에 따른 조치	4. <u>불법정보</u> ----- ----- ----- ----- -----
5. 그 외 <u>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u> 약관, 정책 또는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리한 정보의 유형, 건수, 조치	5. ----- <u>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u> ----- ----- ----- ----- -----
6. (생략)	6.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u>제44조의15(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u> ① 방송미디어통신	<삭제>

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 종류 등의 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제44조의12에 따른 신고와 제44조의4의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제44조의16(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 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는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이하 이 조에서 “허위정보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자율적인 정책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는 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

<삭 제>

한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이하 “사실확인 단체”라 한다)와 사실확인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체결한 협약은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실확인 단체는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정보등에 관하여 사실확인된 정보, 사실확인 후 취한 조치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공자는 보고서의 내용을 제1항의 허위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정책에 따라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제공자는 제4항에 따라 보고서의 내용을 서비스에 반영한 사실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실확인의 범위, 보고서의 공개 방법, 서비스에 반영한 사

실의 공표 방법, 협약체결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44조의17(투명성센터 설치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과 제
44조의16에 따른 사실확인 단
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
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이하
“투명성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투명성센터는 사실확인 활
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
스 운영 및 지원
2. 사실확인 단체에 대한 지원
3. 사실확인에 대한 연구와 교
육 지원
4.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국
제협력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

제44조의18(분쟁조정부) ① 심의

<삭 제>

제44조의18(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제44조의12제3항의 조치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부를 둔다.

② 제1항의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위원은 각각 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언론사의 취재·보도·제작 업무(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취재·보도·제작 업무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 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 그 밖에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그 밖에 정보통신망 또는 언
론에 관하여 학식이나 전문성
이 인정되는 사람

③ 삭 제

④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44조의19(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① 분쟁조정부의 위원(이
하 이 조 및 제44조의22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제44
조의18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
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
척된다.

1. ~ 4. (생략)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
운 사정이 있으면 분쟁조정부
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부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생략)

제44조의19(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①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

1. ~ 4. (현행과 같음)

② -----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명예훼손 분
쟁조정부-----
-----.

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의20(분쟁의 조정) ① (생략)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분쟁조정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의뢰받은 분쟁조정부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부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생략)

제44조의21(자료요청 등) ① 분쟁조정부는 제44조의18제1항의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분쟁조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4조의20(분쟁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

③ -----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의21(자료요청 등) ①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

제44조의22(조정 의 효력) ① 분쟁

조정부는 제44조의20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분쟁조정부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 및 각 당사자는 그 조정서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44조의23(조정 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부는 분쟁의 성질 상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분쟁조정부는 신청된 조정

제44조의22(조정 의 효력) ① 명예

훼손 분쟁조정부-----

-----.

② -----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

③ -----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의23(조정 의 거부 및 중지)

①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44조의24(불법정보 또는 허위

<삭 제>

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이미 법원에 의하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제44조의10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

과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5(의견제출) ① 방송미

<삭 제>

디어통신위원회는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 등을 하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4조의26(과징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 ① 방송미디어통신위

<삭 제>

원회는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
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
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
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5.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
부의 분쟁조정 업무

제70조(벌칙) ① ~ ③ (생략)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
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
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제66조(비밀유지 등) -----

-----.

1. ~ 4. (현행과 같음)

5. 명예훼손-----

제70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u>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정한다.</u> 제76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4의2. 제4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u>분쟁조정부의</u>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4의3. (생략) 4의4. 제44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u>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u> 4의5. ~ 24. (생략) ④ (생략)	제76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 ---<u>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u>--- ----- ----- ----- 4의3. (현행과 같음) <u><삭 제></u> 4의5. ~ 2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